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민법상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결격사유 변경(안 제22조제1호~제2호)
  - 금치산자 ⇒ 피성년후견인
  - 한정치산자 ⇒ 피한정후견인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지도협회의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- 획일적으로 능력을 제한하는 기존의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 제22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 지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민법상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본조례의 제22조(결격사유)의 “금치산자”, “한정치산자” 용어를 “피성년후견인”,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22조(결격사유)의 용어 변경

- 금치산자 → 피성년후견인
- 한정치산자 → 피한정후견인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민법 제9조,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6. 4. 7 ~ 4. 27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피한정후견인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금치산자</u></p> <p>2. <u>한정치산자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22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</p> <p>2. <u>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